개선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KB증권㈜

2. 조치일 : 2019. 4. 22.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개선사항 2건

4. 조치대상사실

(1)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운영 불합리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가장·통정성 주문거래 관련 사항만 의심거래 추출기준으로 운영하고 있고, 불공정거래의 주요 의심 유형인 시가·종가 관여 주문거래, 허수성 주문거래 등과 관련된 추출기준은 운영하고 있지 않아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가 누락될 우려가 있고

대포통장 관련 의심거래 추출기준이 일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고,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에서 적출된 대포통장 등 의심계좌 리스트가 자금세탁방지부서와 공유되지 않음에 따라 대포통장을 통한 이상거래 등이 의심거래 보고대상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대포통장을 통한 이상거래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 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2) 고객확인 업무 운영 불합리

자체 위험평가모형 적용 결과 중·저위험 고객으로 분류되었으나 자금세탁방지 업무 규정상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EDD)*에 해당되어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고객이 고위험 고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고객위험평가 모형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 고액자산가, 대부업자, 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등

고위험 고객은 1년, 중·저위험 고객은 3년으로 고객확인 재이행주기를 설정 하고 있으나 고객이 지점을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비대면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만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지속적인 고객확인 업무 수행이 재이행 주기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위험평가 모형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고객 위험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고객확인 재이행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